국민동의청원서

등록일자	2023. 8. 8.		
동의기간	2023. 8. 14. ~ 2023. 9. 13.	국민동의 수	50,000
청 원 자	성 명 김지성		
제 목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			

청 원 원 문

[청원의 취지]

교원지위법에서 보호하려는 교육활동의 법률적 정의를 학교안전법의 교육활동의 개념을 빌림으로 인하여 교사가 학교에서 직접적인 교육활동(수업)을 하는 상황 외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결국 교사가 수업 활동 이후의 업무시간이나 퇴근 후 개별 상담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폭언이나 과도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조차 할 수 없고, 개별적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 이에 교육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여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자 청원을 합니다.

[청원 내용]

경남에서 근무하는 21년 차 초등교사 김지성입니다.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.

〈교원지위법〉제15조(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)

-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이하 "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"라 한다)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교육활동 침해행위"라 한다)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(이하 "보호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- 위 「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(이하 교원지위법) 제1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'교육활동'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? 교원지위법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관련 법에서도 교육활동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? 우리나라에는 교육활동이 무엇인지도 고민하지 않고, 규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.

우리나라에서 교육활동이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학교 안전법)에서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디까지 보상을

해 줄 것인지 결정하는 법입니다. 결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도,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 때도, 교육부 장관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기준을 고시로 정할 때도 학교안전법의 교육활동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

그로 인해 수업 이후 혼자 교실에 있을 때, 수업 외 별도의 업무를 행하고 있을 때, 퇴근 후 학부모와 상담할 때, 출장을 통한 업무를 수행할 때 등의 상황에서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하더라도,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교육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.

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개념을 학교안전법에서 빌려 쓸 것이 아니라, 교원지위법에 법률로써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.

또한 교원이 학교에 머무는 모든 시간 및 퇴근 이후 이루어지는 교사의 모든 교육활동(상담, 초과근무 등)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교육활동의 범위를 명시하여야합니다.

그래야 수업 중이거나 수업 이후에도 폭언, 악성 민원,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.

교육부와 국회는 조속히 이를 검토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.